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도자료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4호,
TEL.042-331-0092,FAX.042-252-6976 www.cham.or.kr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22년 10월 19일(수)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설재균 의정감시팀장, 042-331-0092/010-3583-8786)

제 목 / 의정비 현실화는 영리행위 금지부터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95년도에 출범하여 대전 시민과 함께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 5개 구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4.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5개 구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오니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의정비 현실화는 영리행위 금지부터

대전 5개 구의회 의정비 심의가 이어지고 있다. 각 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안을 제안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인상액이 지방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상회해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 뒤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의정비 인상을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첫째,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함께 이야기 해야한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을 함으로써 지급되는 비용이고,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연구하는 등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정액 지급된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즉, 직무활동 수당과 함께 의정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보조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과 함께 지급되며 별도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도 않는다. 의정활동비가 급여처럼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2022년 5개 구 지방의원의 수령액은(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대덕구의회 월 326만원, 동구 월 329만원, 서구의회 월 369만원, 유성구의회 월 331만원, 중구의회 월 316만원을 지급한다.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 금액만을 언급하며 현실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둘째, 지방의원은 영리행위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을 제외한 직을 맡을 수 있으며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다. 각 의회 별로 적지 않은 수의 의원이 경직을 신고했으며, 의원직과 병행 하고 있다. 별도의 영리행위를 하면서, 지방의원의 급여를 올리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정당성마저 부족하다. 지방의원의 급여 현실화가 목적이라면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셋째, 의정비 심의의 기준이 모호하다. 지역 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서 기준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의정활동 실적이 기준이라면 조례를 단순히 많이 제정하고, 개정한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그렇다면 기준에 있어 각 구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설정 하는 것도 가능하다. 월정수당의 책정 기준을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대내외적 상황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고유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시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져 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월정수당 인상액은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인상액이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의정비 심의에 있어 시민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사회적 합의를 했어야만 했다. 실제로 대덕구, 서구, 중구는 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공무원 인상률에 맞춘 1.4% 내외로 합의했으나 의회의 요구로 재심의를 이뤄져 큰 폭의 인상액이 제안됐다. 이에 따라 4개 구(대덕구, 동구, 유성구, 중구)는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일정과 장소를 알고 있지 못하며 참석하기도 어렵다. 의정비 심의에 투명성과 결정과정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의정비 현실화는 필요하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더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상 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 시작은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대한 필요와 당위성을 지역주민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제도적 제한을 만들어가는 것이 출발이다.

2022년 10월 19일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병구